

「児童手当」の申請について (2012年4月1日～)

[아동 수당] 신청에 관해서 (2012년 4월 1일～)

※「子ども手当」は、2012年4月から「児童手当」に変わりました。

※「어린이수당」은 2012년 4월부터「아동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1 児童手当は次のような場合に支給されます

1 아동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児童手当制度とは？

日本国内に住民登録をしている方で、支給対象となる子どもを養育している方に手当が支給されます。

(1) 아동 수당 제도란?

일본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2) 支給対象となる子ども

0歳から中学校修了までに相当する年齢の子ども（15歳になった最初の3月31日まで）が対象になります。

なお、海外に住んでいる子ども（留学の場合を除く※）は原則支給対象にはなり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

※留学を理由に海外に住んでいる場合は、以下の要件を全て満たし、留学に関する必要書類を提出すれば支給対象となります。

- ・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った前日までに日本国内に継続して3年を超えて住所を有していたこと
- ・教育を受けることを目的として海外に居住しており、父母（未成年後見人がいる場合はその未成年後見人）と同居していないこと
- ・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った日から3年以内であること

(2) 지급대상이 되는 어린이

0세부터 일본의 중학교 수료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어린이 (15세가 된 후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에 살고 있는 어린이(유학의 경우를 제외*)는 원칙적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유학에 관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본 국내의 주소가 없어지는 전날까지 일본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미성년자 후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미성년 후견인)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

일본 국내의 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3) 支給金額

子ども1人につき、以下のとおり支給されます。

| (支給対象年齢) | (支給月額) |
|---------------|------------------------------------|
| 0歳～3歳未満 | 15,000円(一律) |
| 3歳～小学校修了前 | 10,000円(第1子・第2子) 15,000円(第3子以降) |
| 中学生 | 10,000円(一律) |
| 所得制限を超える場合(※) | 5,000円(一律) |

※所得制限の基準は、扶養親族の人数や各種の控除により変わります。詳しくは4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3) 지급 금액

어린이 한 명당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연령) | (지급월액) |
|----------------|---|
| 0세~3세미만 | 15,000(일률) |
| 3세~초등학교 졸업전 | 10,000(첫째아이, 둘째 아이) 15,000(셋째 아이 부터) |
| 중학생 | 10,000(일률) |
| 소득제한을 넘는 경우(※) | 5,000(일률) |

※ 소득제한의 기준은 부양가족의 인원수와 각종 공제에 따라 바뀝니다. 자세한 것은 4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支給時期及び方法

年3回の支払月(6月、10月、2月)に、その前月までの4ヶ月分の「児童手当」が支給されます(2012年2月、3月(2ヶ月分)の「子ども手当」は、2012年6月時に支給)。子どもを養育している方名義の口座に振り込まれます。

(4) 지급시기 및 방법

연 3회의 지불 달(6월, 10월, 2월)에 그 전 달까지의 4개월 분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2012년 2월, 3월(2개월 분)의 「어린이수당」은 2012년 6월에 지급).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 児童手当を受け取るためには、申請が必要です

2 아동 수당을 지급받으실 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1) 児童手当の支給を受けるためには、申請が必要です。手当を受けたい方は「児童手当認定請求書」に必要なことを記入し、(2)の書類と一緒に、4の申請窓口に申請してください。市区町村が申請内容を確認し、認定した場合に手当が支給されます。

なお、2012年3月までの「子ども手当」を受け取っていた方は、申請手続きは必要ありませんが、(5)の「現況届」の提出が必要になるのでご注意ください。

(1) 아동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당을 받으실 분은 [아동 수당 인정청구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2) 서류와 함께 4.

의 신청 창구에 신청하십시오. 시구읍면이 신청내용을 확인, 인정한 경우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2012년 3월까지의 「어린이 수당」을 수급하고 계셨던 분은 신청 수속이 필요 없지만, (5)의 「현황신고」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申請する時に「児童手当認定請求書」と一緒に提出するもの

- ・申請する人の健康保険証（健康保険に入っている場合）の写し
- ・振り込み先の預金通帳の写し（申請者本人の口座に限ります）

※その他、必要に応じて書類の提出を求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2) 신청 시 [아동 수당 인정청구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

- ・신청자본인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 복사
- ・입금구좌용 통장의 복사 (신청자 본인의 구좌에 한함)

※그 외, 다른 서류의 제출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2011년10월からの「子ども手当」の支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た方で、まだ申請手続きが済んでいない場合は、2012年9月末日までに申請をすれば、その分の手当を遡って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3) 2011년 10월부터의 「어린이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던 분으로, 아직 신청수속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2012년9월 말일까지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수당을(과거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原則として、申請のあった月の翌月分から支給されます。

(4) 원칙적으로 신청이 있던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지급됩니다.

(5) 「児童手当」の支給を受ける方は、養育状況や所得の確認のため、毎年6月に、「現況届」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未提出の場合は、手当が受けられなくな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現況届」については、4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5) 「아동 수당」의 지급을 받으시는 분은 양육상황과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6월에 「현황신고」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신고」에 대해서는 4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お願い

3 당부

次のような場合には手続きが必要です

- ・住所が変わったとき（他の市区町村に転居した場合、新しい住所の市区町村で、改めて児童手当の申請が必要です。）
- ・本人又は、対象の子どもが出国するとき
- ・子どもを養育しなくなったとき
- ・子どもと別居するとき
- ・出生や死亡などで、児童手当支給の対象となる子どもの数が変わったとき
- ・振込先の口座を変更するとき（新しい振込先は、申請者本人の口座に限ります。）
- ・受給者が公務員になったとき

など

※出生や、他の市区町村へ転出する場合は、その翌日から15日以内に手続きをしてください。手続きが遅れた場合、手当の支給を受けられない月が発生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새로운 주소의 관할행정기관에 아동 수당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대상의 어린이가 출국 하는 경우
- 어린이의 양육을 하지 않게 된 경우
- 어린이와 별거하게 된 경우
- 출생 및 사망 등으로, 아동 수당의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
- 입금구좌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입금구좌는 신청자 본인의 구좌에 한합니다.)
- 수급자가 공무원인 경우

등

※출생이나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속을 하십시오. 수속이 늦었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는 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お問い合わせ先 (申請窓口)

4 문의처 (신청창구)